

교부 또는 재교부수수료(제62조제2항관련)

| 허 가(면 허)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 수 료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1. 법 제4조에 따른 제조업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가. 총포(공기총을 제외한다) 제조업 허가                     | 3만원   |
| 나. 공기총·도검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 제조업 허가               | 2만원   |
| 다. 총포 수리업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만원   |
| 라. 산탄탄알·연지탄 제조업 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| 5천원   |
| 마. 화약·폭약·제조업 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만원   |
| 바. 화약류 변형 가공업 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만원   |
| 사. 화공품 제조업 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만원   |
| 아. 꽃불류 제조업 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만원   |
| 자.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천원   |
| 2.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·임대업 허가                 |       |
| 가. 총포·도검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 판매업·임대업 허가            | 1만5천원 |
| 나. 화약류 판매업 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만원   |
| 다. 판매업·임대업 허가사항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| 5천원   |
| 3. 법 제21조에 따른 화약류의 양도·양수허가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가. 화약·폭약 40톤 이상의 양도·양수허가                    | 1만원   |
| 나. 화약·폭약 20톤 이상 40톤 미만의 양도·양수허가             | 8천원   |
| 다. 화약·폭약 10톤 이상 20톤 미만의 양도·양수허가             | 5천원   |
| 라. 화약·폭약 10톤 미만의 양도·양수허가                    | 3천원   |
| 4. 법 제12조에 따른 총포·도검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소지허가      |       |
| 가. 엽총·소총·권총의 소지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천원   |
| 나. 공기총·도검·산업공업용총·그 밖의 총포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소지허가 | 3천원   |
| 5.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허가             | 2천원   |
| 6. 법 제18조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가. 화약·폭약 100톤 이상의 사용허가                      | 1만원   |
| 나. 화약·폭약 50톤 이상 100톤 미만의 사용허가               | 8천원   |
| 다. 화약·폭약 10톤 이상 50톤 미만의 사용허가                | 5천원   |
| 라. 화약·폭약 1톤 이상 10톤 미만의 사용허가                 | 3천원   |
| 마. 화약·폭약 1톤 미만의 사용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| 2천원   |
| 바. 꽃불류 사용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천원   |
| 7. 법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                  |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가. 1급 저장소 설치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만원     |
| 나. 2급 저장소 설치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천원     |
| 다. 3급 저장소 설치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천원     |
| 라. 수중·실탄·꽃불류·장난감용 꽃불류·도화선 저장소<br>및 간이저장소 설치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| 3천원     |
| 8. 법 제28조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 및 화약류관<br>리보안책임자 면허                      | 3천원     |
| 9.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재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천원     |
| 10. 법 제4조의2(법 제6조의2 또는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하<br>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|         |
| 가. 총포(공기총을 제외한다)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만원     |
| 나. 공기총·도검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 제조업자의<br>지위승계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천6백원   |
| 다. 총포수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천3백원   |
| 라. 산탄탄알 및 연지탄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천6백원   |
| 마. 화약·폭약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만6천6백원 |
| 바. 화약류 변형 가공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만원     |
| 사. 화공품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천6백원   |
| 아. 꽃불류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천3백원   |
| 자. 총포·도검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 판매업 및 임대<br>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| 5천원     |
| 차. 화약류 판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천6백원   |
| 카. 1급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천3백원   |
| 타. 2급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천6백원   |
| 파. 3급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천6백원   |
| 하. 수중·실탄·꽃불류·장난감용 꽃불류·도화선 저장소<br>및 간이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                | 1천원     |